청렴韓세상

2026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Support System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

1 제도개요

지방중심 균형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지방 신·증설기업

국내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여 투자하는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의 남측 모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이 안내자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호, 2026. 2. 9.)」 참조

지원유형

2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매입과 설비투자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유형

입지보조금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이전기업(대기업의 경우 균형발전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내 투자만 해당), 신·증설 기업 (중소·중견기업의 균형발전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내 투자만 해당),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

설비보조금

1. 건설투자비용

지방 사업장 신·증축 등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이내로 인정

2. 기계장비구입비용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생산에 필수적인 S/W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 내용연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인정 불가 항목

인건비, 원자재,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등의 비용

3.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건설투자면적 중 주차장, 보육시설,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

※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20% 범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은 30%)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건설투자비용에서 정하는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 이내에서 건물표준단가 내로 인정)

고용보조금

지식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을 영위하는 기업에 신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1인당 100만 원/월, 최대 12개월, 100명 한도

※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된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지급되는 추가고용인센티브(p.11)와 중복지급 불가

3

지원요건 1

지방이전기업

투자유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지원요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국내법인일 것
2.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투자수행요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에 속할 것
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전까지 매각할 것

지원요건 2

3

지방 신·증설기업

투자유형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이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증설이란?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원요건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국내법인일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투자수행요건

1.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을 신규고용 할 것
 ※ 10% 미만이라도 중소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00명인 대기업의 경우, 10%면 100명을 고용하여야 하나, 지방의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80명을 고용하더라도 70명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지원 가능
2.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는 기존사업장의 고용인원유지도 포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4. 기존사업장 사업과 동일하거나 밀접 연관 사업을 위해 투자할 것

3

지원요건 3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투자유형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 간 ②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지원요건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

투자수행요건

1.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은 유지 의무 제외

우대사항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신설법인도 지원 가능
-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추가 :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지원요건 4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투자유형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의 남측 모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요건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개성공단 중단조치(2016년 2월 10일)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투자수행요건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4

지원비율

지원범위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국비:지방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45:55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65:35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75:25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75:25 최대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 보조금 유형의 입지는 토지 매입비, 설비는 건축비와 기계장비 구입비를 말함
*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교부결정액 기준)과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교부결정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
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
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
다. 그 외의 지역 : 150억 원

2.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
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
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
다. 그 외의 지역 : 200억 원

* 설비보조금은 모든 지방투자기업에 지원
* 입지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 신·증설기업(중소·중견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지원 (단, 지방이전 대기업 및 신·증설기업은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한함)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투자사업장에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비율 적용
* 사업장 실착공 시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를 지급, 투자완료 및 정산 후 설비보조금의 30% 지급

4 지원비율

지역구분

지역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자치구포함)
균형발전 상위지역 (22개)	부산광역시(3)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대구광역시(3)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대전광역시(2)	서구, 유성구
	울산광역시(3)	남구, 북구, 울주군
	충청북도(1)	청주시
	충청남도(2)	아산시, 천안시
	경상북도(1)	구미시
	경상남도(5)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세종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1)	제주시
균형발전 중위지역 (83개)	부산광역시(10)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대구광역시(5)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광주광역시(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울산광역시(2)	동구, 중구
	강원특별자치도(12)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충청북도(6)	제천시,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충청남도(10)	서산시,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예산군
	전북특별자치도(4)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라남도(9)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화순군
	경상북도(10)	김천시, 칠곡군,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경상남도(6)	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제주특별자치도(1)	서귀포시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부산광역시(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1)	군위군
	강원특별자치도(6)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4)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청남도(3)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전라남도(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경상북도(11)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예천군
	경상남도(7)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5

지원우대

보조금 신청시

※ 설비보조금의 최대 20% 이내 지원 가능(단,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은 대기업 25%, 중견기업 28%, 중소기업 30% 한도), 일부 항목 중복 제외(기타 우대사항 1, 2 중복 가산 불가, 신규고용인센티브와 기타 우대사항 3 중복가산 불가) : 고시 제15조(지원특례) 참조

신규고용인센티브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10%p 가산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80명 이상	3%p	5%p	10%p

기타 우대사항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가산
2.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의 2%p 가산
 ① 구조고도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②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
 ③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④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⑤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⑥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수소전문기업
 ⑦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⑧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⑨ 사업재편기업
 ⑩ 준공 후 5년이상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⑪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안정화 계획 이행을 위해 투자하는 선도사업자
 ⑫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3.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우대 :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가산
4.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 입지 및 설비보조금 대기업 5%p, 중견기업 8%p, 중소기업 10%p 가산

지원우대

5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추가고용인센티브

유지대상 기존사업장의 고용이 유지되고,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고용계획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고용보조금(p.3)을 지급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불가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5명 이상 1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1%
10명 이상 2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2%
20명 이상 3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3%
30명 이상 4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4%
4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



6 유의사항

투자협약

1. 투자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입지계약체결일 또는 착공신고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 등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지+설비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초 입지계약체결일
 ※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일)

2. 투자협약은 투자협약일로부터 보조금 신청일(신청공문이 산업통상부에 접수된 날) 기준으로 3년 이내만 인정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기한(기업→지자체)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최초 매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협약이 체결된 폐건물도 인정되며, 폐건물 매입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투자 시에는 실질적인 투자 행위를 기준으로 착공신고일, 폐건물 최초 계약 체결일, 건축신고(허가) 일, 최초 공사 계약 체결일 또는 용도변경 허가 일을 착공신고일로 대체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단,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6 유의사항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1. 보조금 수령 전 지방자치단체에 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채권을 제공하여야 함
2. 투자완료일(기업이 지정한 투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함
 ※ 조기 정산을 원할 경우 투자 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 가능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기등기 하여야 함
4. 정산신청일로부터 5년간(사업이행기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5. 투자기간 및 사업이행기간 중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보조금 환수

1.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기존 및 투자사업장을 임의로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5.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6.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9.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요구수준을 미달하는 경우
11.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7

지원절차

지원흐름도

투자기업 ⟷	지자체	1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
투자기업 →	지자체(기초)	2	보조금 신청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3	보조금 신청서 제출
지자체(광역) →	산업통상부	4	지자체 타당성평가 후 신청서 제출 ※ 산업부, 산단공 :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실시
산업통상부 →	지자체	5	보조금 교부(국비) 70%
지자체 →	투자기업	6	보조금 지급(국비+지방비) 70%
투자기업 →	지자체	7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 ※ 지자체·산단공: 정산검증
지자체 →	투자기업	8	보조금 지급(국비+지방비) 30%
지자체 →	투자기업	9	사업이행기간(5년)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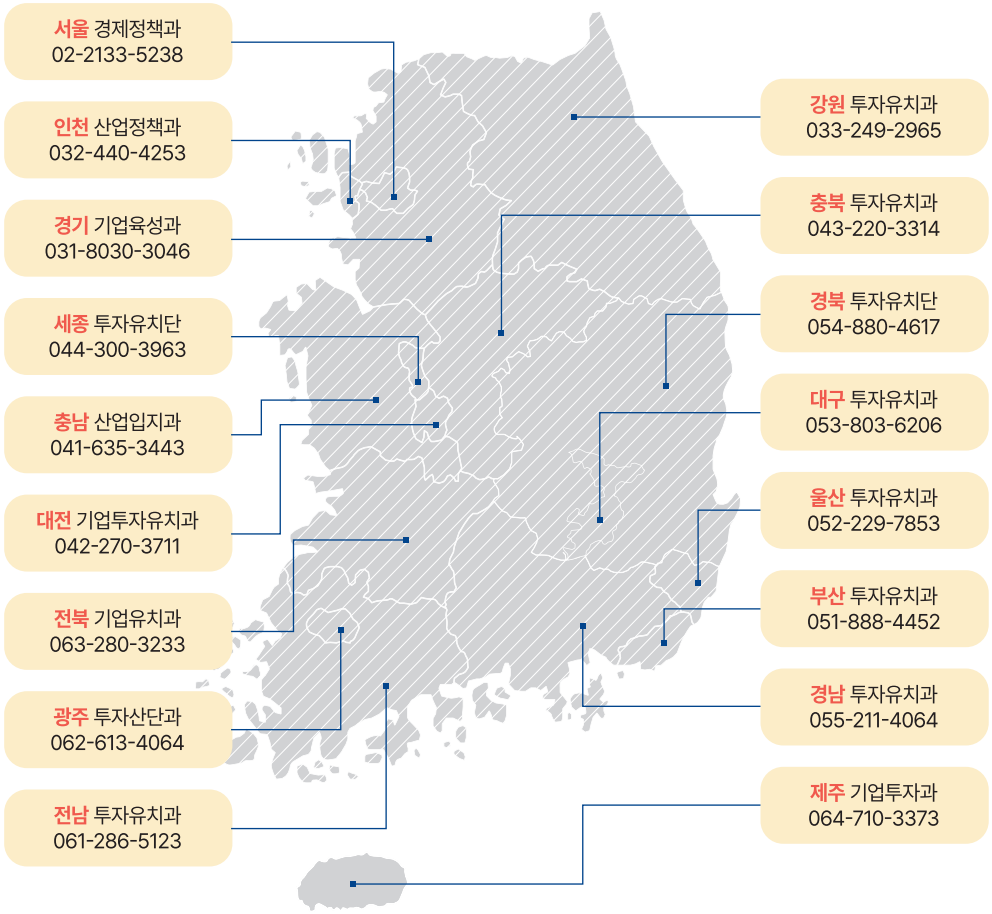
문의처

8

www.kicox.or.kr

지방자치단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보조금 신규 지원대상이 아님



관리기관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3, 4429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투자팀
070-8895-7265, 7184, 7190, 7192~3, 7195~7

2026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Support System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